# 고 소 장

(고소장 기재사항 중 \*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)

## 1. 고소인\*

성 명 (상호·대표자)	나고소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900101-1000000	
주 소 (주사무소 소재지)	신창면 황산길 100-50			
직 업	무직			
전 화	010-1111-1111			
이메일	없음			

- ※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, 대표자, 법인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,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.
- \*\*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,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### 2. 피고소인\*

성 명	나피고	주민등록번호	모름
주 소	모름		
직 업	건설업		
전 화	010-2222-3333		
이메일	모름		
기타사항	고등학교 동창, 계좌번호(신한, 110-111-11111)		

※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, 특징적 외모,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3. 고소취지\*

(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)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차용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4. 범죄사실\*

피고소인은 2023 년 9월 13일 14시 2분경 아산시 신창면 카페드폴에서, 고소인에게 "1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110만원을 돌려주겠다"는 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여,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금으로 받았습니다.

※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, 장소, 범행방법,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,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,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#### 5. 고소이유

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은 사기범행을 하였습니다. 피고소인과는 합의하지 않았으며,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

※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,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,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
#### 6. 증거자료

카카오톡 대화내역, 계좌거래내역

## 7.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\*

(■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① 중복 고소 여부	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<b>없음</b>
② 관련 형사사건	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
수사 유무	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<b>없음</b>

※ ①,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,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·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,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,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
### 8. 기타

피해자가 홍길동 외 여러명이 있음

(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)

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,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 조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

2024년 1월 18일

고소인 \_\_\_\_(인)\*

제출인 \_\_\_\_(인)

※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,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(무)인 해야 합니다.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#### 아산경찰서 귀중

※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.